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20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은 당초 행자부가 분리발주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77조를 개정하여 ‘공사의 분할 및 분리발주 시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등 상급기관에 보고’ 토록 입법예고 되었으나, 우리협회는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하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근거 조항인 단서3호는 제외’ 토록 추진함에 따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하도급관리계획을 불이행한 원도급업체는 앞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아 입찰참가자격이 최소 1개월에서 최고 6개월 미만까지 제한된다. 이밖에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단품슬라이딩제를 도입해 특정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등락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 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7조 개정 내용의 의의 및 우리 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개정내용의 의의

- 건설공사 분리·분할 발주시 부패요인 발생의 차단을 요구한 국가청렴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는 분리·분할 발주시 감사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입법예고 하였다.
- 우리협회의 끈질긴 건의와 노력에 의하여 개정 내용에는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근거 조항인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7조 제3호는 동조 제2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3호에 “공중”을 명시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개 정 전	개 정
<p>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p> <p>1. (생략)</p> <p><u><신설></u></p> <p>2.·3. (생략)</p> <p>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p> <p>가. ~ 자. (생략)</p> <p><u>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u></p> <p>카. 특정인과의 <u>학술연구용역계약</u>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타.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u>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u></p>	<p><u>제1항제2호에 따른 다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시 총액에 대한 다가 산출내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u></p> <p>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p> <p>①----- ----- -----.</p> <p>1. (현행과 같음)</p> <p><u>1의2.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u></p> <p>2.·3. (현행과 같음)</p> <p>4. ----- ----- -----</p> <p>가. ~ 자. (현행과 같음)</p> <p><u>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u></p> <p>카. -----<u>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u>----- ----- -----</p> <p>타.----- -----<u>임차하는</u>-----</p>

개 정 전	개 정
<p>파. (생 략) <u>〈신 설〉</u></p> <p><u>〈신 설〉</u></p> <p>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u>1억원</u>(「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u>7천만원</u>,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u>5천만원</u>) 이하인 <u>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u></p> <p>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p> <p>가. 나. (생 략)</p> <p><u>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u></p> <p>라. ~ 사. (생 략)</p> <p>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p>	<p>파. (현행과 같음)</p> <p><u>하.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소재한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u></p> <p><u>거.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u></p> <p>5. -----2 <u>억원</u>-----<u>1억</u> <u>원</u>----- ----- ----- <u>8천</u> <u>만원</u>-----<u>공</u> <u>사</u>----- ----- -----<u>5천만원 이하인 물</u> <u>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u> <u>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u></p> <p>6.----- ----- -----</p> <p>가. 나.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라. ~ 사. (현행과 같음)</p> <p>7.----- ----- -----</p>

개 정 전	개 정
<p>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p> <p>④·⑤ (생략)</p> <p>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u>10일</u> 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p> <p>②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u>10일</u>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u>20일</u>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u>40일</u> <p>〈신설〉</p> <p>④ (생략)</p> <p>〈신설〉</p>	<p>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p> <p>①----- -----<u>7일</u>-----.</p> <p>②----- -----<u>제15조제4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u>----- ----- -----.</p> <p>③-----<u>현장설명</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7일</u> 2. ----- <u>15일</u> 3. <u>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u> 4. <u>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u>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개 정 전	개 정
<p>〈신 설〉</p> <p>② ~ ④ (생 략)</p> <p>⑤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p> <p>⑥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의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반환하여야 한다.</p>	<p>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게 할 수 있다.</p> <p>1.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p> <p>2.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p> <p>3.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p> <p>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p> <p>⑥ ----- ----- -----제5항에 -----도----- -----.</p> <p>⑦ ----- ----- -----제5항에 따 -----관----- ----- -----100분의 10(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제1 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p>

개 정 전	개 정
<p>② ~ ⑤ (생략) <u><신설></u></p> <p>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u>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u> <u>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u>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p><u><신설></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u>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u></p> <p>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p> <p>①-----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u>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u> <u>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u> <p><u>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u></p>